

의안번호	제 95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
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월 1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

의안 번호	95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(21.12.15.공포, '22.1.13.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순 인용조문 변경
 -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(시행령 94조 → 95조)
 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(시행령 76조 → 74조)
 -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(시행령 78조 → 76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

제1조(「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94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95조”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7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74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78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7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1.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95조에 ----- ----- -----.

2.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북도립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② (생략)	제15조(설치) ①----- ----- -----제74조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3. 중복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·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·제29조 「지방자치법」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<u>제78조</u>의 규정에 따라 중복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76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,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,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 시키며,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